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47 발의연월일: 2021. 6. 3.

발 의 자:진선미·김경협·김성환

김회재・박영순・송옥주

오영환 · 위성곤 · 이재정

조오섭・진성준・한준호

홍익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화물차의 과적은 도로파손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, 제동거리 및 전도위험성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.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사고 사망자 비율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43%에서 2019년 51.7%로 증가하였으며, 2015~2019년간 523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였음.

현행법령은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적 발생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'화주의 지시·요구'에 대해서는 운전자가신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화주의 과태료 부과 사례는 최근 5년간 0.25%에 불과함. 화물업계의 특성상 운전자가 화주를 신고하기 어렵고, 지시·요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화주 등이 과적을 지시·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화물차의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, 화주 등에

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,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(안 제77조제3항, 제117조제1항 및 제5항). 법률 제 호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제3항 중 "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"을 "지시·요구하거나 적재된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서는"으로 한다.

제117조제1항제3호 중 "위반한"을 "위반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"지시나 요 구에"를 "지시·요구 또는 사실과 다른 적재화물 중량의 고지에"로 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7조(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	제77조(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
행 허가) ①·② (생 략)	행 허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화주(貨主), 화물자동차 운	③
송사업자, 화물자동차 운송주선	
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	
지시·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	
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	
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	
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	
운전자에게 <u>지시하거나 요구해</u>	<u>지시·요구하거나</u>
<u>서는</u> 아니 된다.	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
	다르게 고지하여서는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1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117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
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
부과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	3
한 위반의 지시·요구 금지를	
위반한 자	위반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
	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-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1. (생략)
- 2.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,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,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<u>지시</u>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,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,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

⑥ (생략)

(5)
1. (현행과 같음)
2
<u>\\</u> \\).
요구 또는 사실과 다른 적재
화물 중량의 고지에
⑥ (현행과 같음)